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0.10.27

행정위원회

###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10월 1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10월 22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10.25) 상정 의결

###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안동수 )

####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 및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 개정안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기여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신설  
(안 제2조제1항제4호)
- 징수촉탁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3조제7호)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현 영)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에 관련된 사항이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련조례 준칙안에 의한 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7 호
----------	--------

제출연월일 : 2010.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2010.1.1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시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자동차세 체납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 신설.
- 나. 그 밖에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용어로 수정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56조 제3항 (2010.1.1 신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0.7.21 ~ 8. 9)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4.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3조의2 중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4인 내지 6인으로”를 “4명부터 6명까지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

제6조제1항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다음년도”를 “다음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를 “제4항에 의하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촉탁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p>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6.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제3조(지급기준) ----- -----.</p> <p>1.~6. (현행과 같음)</p> <p><u>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u></p>
<p>제3조의2(지급한도) <u>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u>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2.(생략)</p>	<p>제3조의2(지급한도) <u>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u> ----- -----.</p> <p>1.~2.(현행과 같음)</p>
<p>제4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u>1인</u>을 포함한 위원 <u>4인 내지 6인으로</u>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u>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u></p> <p><u>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u></p> <p><u>3.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u></p> <p>⑤~⑥ (생략)</p>	<p>제4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u>1명</u>----- ---- <u>4명부터 6명까지로</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u>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u></p> <p><u>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u></p> <p><u>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u></p> <p>⑤~⑥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 (지급신청) ① 제3조 <u>각 호의 규정에 의한</u>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p>제6조 (지급신청) ① --- <u>각 호에 따른</u> ----- ----- -----.</p> <p>② <u>제1항에 따른</u> ----- ----- ---</p>
<p>제7조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u>당해년도</u>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u>다음년도</u>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 <u>제3조제1호 내지 제3호</u>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p> <p>③ <u>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u>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u>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u>,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7조 (지급) ① ----- ----- ----- --. --, <u>해당년도</u> ----- -----<u>다음년도</u> ---- ---</p> <p>② <u>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u> -- ----- ----- ---</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u> ---- ----- -----<u>제4항에 의하되</u>, ----- ----- ----- --.</p>

현행	개정안
<p>제8조 (환수) ①~② (생략)</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u>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u>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제8조 (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 따라</u> ----- ----- ----- <u>「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u> ----- ----- --.</p>